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O B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63호

의 안 명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건의사항 제도개선 - 지방세 인터넷
대리신고·납부시스템,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개선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역시, 국세청, 특허청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건의사항 제도개선 - 지방세 인터넷 대리신고·납부시스템,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개선 -」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국세청장, 특허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19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김태규

위원 김기표

위원 박계욱

위원 박상희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최정묵

위원 송현주

위원 홍세욱

[별지]

국민의 대표를 위한 헌법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기업 ombudsman 현장회의 건의사항 제도개선

- 지방세 인터넷 대리신고·납부시스템,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개선 -

20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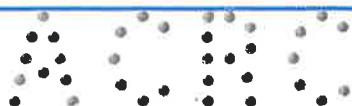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시 불편사항 개선	2
2.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8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I.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정책,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하고,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
 - ※ '14.4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 발굴·해소, 과도한 규제 및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의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협약(MOU), 기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
- 지난 9월 열린 '소상공인 기업 움부즈만 현장 회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로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 추진
 - ※ 국민권익위, 서울중앙법무사회, 변리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참가
-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사전승인 절차 불편
 - 바로 대행·신고 납부가 가능한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행안부 위탁스의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 발생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심화
 - 소상공인의 상호, 레시피 등을 도용(선점)하여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의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빈발

□ 추진경위

- '22. 9. 2. '소상공인 기업 움부즈만 현장회의' 개최
- '22. 10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2. 11월 관계기관 협의
- '22. 12월 소위 및 전원위 안건 상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시 불편사항 개선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현황

- (시스템)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 및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위택스) 구축·운영 중
 - ※ 서울시는 '01년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이택스)를 개발, 지방세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시행 중(이후 부산시('04년), 인천시('05년), 대구시('09년)도 자체 E-Tax(이택스) 운영 중)
 - ※ '19년 기준 가입자수는 위택스는 누적 8,759천명, 서울시 이택스는 누적 2,594명
- (종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상 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이상 시·군세) 등 11종
 - ※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징수현황) '20년 기준 약 106조 1,662억원 부과, 약 102조 488억원 징수

<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행정안전부 자료, 결산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과액	75,793,162	80,465,229	85,226,402	88,873,283	94,822,897	106,166,223
징수액	70,977,794	75,531,651	80,409,137	84,318,258	90,460,408	102,048,782
불납결손액	649,955	824,206	807,158	887,043	826,525	791,132
미수액	4,165,413	4,109,372	4,010,107	3,667,982	3,535,964	3,326,309

※ (불납결손액) 시효완성 등으로 세입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된 금액

※ (미수액) 당해연도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은 안된 금액

○ (납부방식) 신고에 의한 납부, 고지서 송달에 의한 납부 등으로 구분

< 지방세 세목별 종류 >

세 목		납부방식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등록 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면허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1월
재산세	재산세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7월, 9월
	도시지역분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합산)	7월, 9월
레저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매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4월, 5월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7월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매월
지방소비세		기타	국세청장관세청장 송금, 광역지자체에 안분 납입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매월
자동차세	보유분	보통징수	기초지자체에서 고지서 송달, 납부	6월, 12월
	주행분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기초지자체에 안분 납입	매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신고납부	기초지자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수시
	특정부동산분	보통징수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7월, 12월
지방교육세		기타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본세 절차에 따름	본세에 따름

○ (지방세 납부 시스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안부 고시)」

- (종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위택스, 행안부), 지방세납부시스템(E-Tax, 이택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분('19년 기준)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행안부 등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시스템 종류	위택스	이택스			
도입연도	2007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가입자수(누적)	8,758,849	2,594,447	540,390	445,465	104,747
납부금액	18,825,460 (신고·납부액)	24,169,476 (고지·납부 포함)	4,817,351 (고지·납부 포함)	3,929,380 (고지·납부 포함)	493,942 (고지·납부 포함)

□ 문제점

○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사전승인 절차 불편

-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 외 일반인도 신고·납부 대행 가능

※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전 승인 없이 대행 납부 가능

※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국세기본법 제82조)

제82조(납세관리인)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 또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제도 운영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6호 서식)

※ 지방세기본법은 별도 명문 규정은 없으나 개별 조문에서 대리인 신고·납부 허용 (제19조(근거과세),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등)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택스 시스템 상 대행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대행인 신청 필요(세무사일 경우 위임장 없이 위임자 목록과 세무사 등록증 사본 첨부 신청)



< 대행인 신청 첨부서류(위택스 공지 내용 재정리) >

구분	첨부서류
세무대리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위임자 목록, 세무사등록증 사본 ■ (법인) 위임자 목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납세관리인	■ 납세관리인설정신청서, 세무사등록증 사본
법무사	■ 위임장
친족 등 기타	■ 위임장(자동접수 미지원)

※ 지자체 민원실 창구를 통해 납부 시에도 별도 위임장 필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호 서식)

< 위택스, 지방세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 >

위택스 대행신청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호 서식														
<p>신청자(대행인) 정보</p> <p>이름: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p> <p>주소: <input type="text"/></p> <p>신청자 인적사항, 신청 지자체, 첨부서류 등 작성</p> <p>신청대상: <input type="text"/></p> <p>신청지역: <input type="text"/></p> <p>신청일자: <input type="text"/></p> <p>신청인명: <input type="text"/></p> <p>신청인 연락처: <input type="text"/></p> <p>신청인 주소: <input type="text"/></p>	<p>■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제3호서식) <개정 2022. 6. 7.></p> <p>취득세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p> <p>국세청장 귀하</p> <p>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p> <p>마도자택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직계존비속 <input type="checkbox"/> 기타</p> <table border="1"> <thead> <tr> <th>스카지</th> <th>취득일</th> <th>연차</th> <th>종류(기호/가목)</th> <th>용도</th> <th>취득 원인</th> <th>취득가액</th> </tr> </thead> <tbody> <tr> <td>가목</td> <td>과외포유액</td> <td>세출</td> <td>① 산출계액</td> <td>② 기한외 과외</td> <td>③ 기한내 과외</td> <td>신고가액 또는 신고세액</td> </tr> </tbody> </table>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취득세 신고의무 1. 「지방세법」 제23조제1항, 제16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지방세특별징수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3. 「지방세특별징수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4. 「지방세특별징수법」 제4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p> <p>취급처: [주소] [전화번호]</p> <p>취급처 인명: [주소] [전화번호]</p> <p>취급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p>	스카지	취득일	연차	종류(기호/가목)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가목	과외포유액	세출	① 산출계액	② 기한외 과외	③ 기한내 과외	신고가액 또는 신고세액
스카지	취득일	연차	종류(기호/가목)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가목	과외포유액	세출	① 산출계액	② 기한외 과외	③ 기한내 과외	신고가액 또는 신고세액									



- 반면, 서울시 이택스는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신고과정에서 신고인 (대행인)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하여 운영 중(부산, 인천 등 동일)

< 서울시 이택스 등록면허세 신고화면 >

The screenshot shows the '등록면허세(등록분)' registration interface. It includes a progress bar with steps 01 to 03. The '신고인 사항'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contains the text '신고인 인적사항만 기재'. The form includes fields for '주민(법정)등록번호', '생년(입국연월)', '성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소', and '이메일'.

- 이에 따라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법무사 등의 불편 민원 발생

【 민원내용 】

-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에 관계없이 즉시 지방세 전자 납부가 가능하나, 서울 외 전국 사용 시스템인 위택스는 정률법 적용 시 바로 전자납부 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선 요망(22. 9월 국민권익위 기업고충 현장회의 건의사항)
- 위택스 시스템에서 세금 신고·납부 대행 신청 시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는 일반인과 같이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개선 요청(21. 7월 국민신문고 민원)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하더라도 자격증 등을 통해 대행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행인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일 뿐이므로 서울시 사례처럼 개선 검토 필요(지자체 세무담당 공무원 의견)

□ 개선방안

○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사전승인 절차 폐지

- 위택스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화면에서 바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을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또는 위택스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

【 개선예시 】

- 대행신고·납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록화면과 위임장 첨부화면이 활성화되도록 조치

- 이택스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시 민원창구 납부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서울시, 부산시 등 이택스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



2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국세청, 특허청]

□ 현황

- (동향)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인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표(브랜드)를 가로채는 '상표 도용(선점)' 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주요 이슈로 부각

* (사례) A씨는 '영등포 여로집'이라는 상호로 1970년부터 50년 넘게 영등포에서 오징어볶음과 오징어무침을 팔아 유명 맛집으로 소문. 최근 상표등록을 하려 했으나, 과거 A씨 식당에서 일했던 B씨에게 해당 상호를 도용(선점)당해 영업상 심각한 피해(국민신문고, '20.9월)

- (관련 법령)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심사기준」 (특허청 예규) 등

※ 상표 등록신청, 선출원주의 원칙, 심사 절차 및 내용,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권 침해 행위 등 상표의 등록과 관리, 권리행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상표권자는 상표법령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

- (상표 출원/등록 현황) 상표 출원·심사·등록 공히 지속적 증가 추세, 특히 최근 1~2년에는 상표출원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

< 상표등록 신청·심사·등록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상표출원	상표심사	상표등록
2016년	181,606	172,301	119,255
2017년	182,918	162,755	116,708
2018년	200,314	172,046	115,025
2019년	221,507	176,180	125,594
2020년	257,933	162,375	116,153
2021년	285,821	199,818	136,629

(통계청 지식재산통계서비스(IPSS)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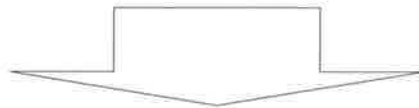


○ (상표등록 절차)

(선등록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선(先) 등록 여부를 간단히 확인 가능 (www.kipris.or.kr)
--------------------	---



(상표 등록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대상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효능 등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등록 가능
-------------------	--



(상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원 원칙 :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한 동일·유사 상표에 적용 ■ 상표등록출원서 제출 : 상표 및 지정상품 등 ■ 특허청(심사관) 심사 : 통상 12개월 내외 소요 ※ 우선심사제도 운영(긴급시)
----------------	--



(출원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공고 : 해당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관련 서류 열람 가능 ■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	--



(상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해당 상표 등록 ■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 ※ 상표권 존속기간은 갱신등록 신청에 의해 10년씩 갱신 ■ 선사용권 인정
----------------	--

- (소상공인 지원)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금전적 지원과 함께, 상표권 관련 교육 및 출원 상담 제공

< 상표권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정책(사례) >

- 사업명 :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 사업목적 : ① 소상공인 보유 상표, 레시피 등의 권리확보를 지원
② 소상공인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상표권 출원 교육·상담 제공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상표권 등 지식재산 기초교육, 금전 지원, 교육·상담 지원
 - 지식재산 기초교육·상담 : 무료
 - 금전지원 : ① 상표출원 비용(정부 지원금 60만원 이내, 분담금 20%)
※ 분담금은 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 시 면제
② IP창출 종합패키지(1,500만원 이내, 분담금 20%)
- 지원절차 : 교육·상담 → 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선정

□ 문제점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심화

- 이른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레시피 등을 도용(선점)하여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의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빈발

※ 상표권의 '선출원주의' 원칙(「상표법」§35)을 악용하여, 미처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는 상당 부분 상표권 등 지적재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정보 부족에서 기인

※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으로 자신의 상호가 보호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상표등록 자체를 알지 못해 '상표 탈취'의 표적이 되는 사례 발생

【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사례 】

- A씨는 천안에서 '그리드모터스, GRID MOTORS'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21.12.8. 사업자등록, 12.23. 영업시작)을 영위 중임. B씨는 이와 같은 A씨의 상호를 가로채 자신의 상표로 출원('22.4.8.), 등록('22.8.11.)한 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A씨에게 해당 상호와 간판을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으로 경고 (국민신문고, '22.8월)
- C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메뉴 '뽕죽'이 인기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진행자의 극찬을 받고 많은 인기를 얻자, 프랜차이즈 업체 D사가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뽕죽뽕죽'으로 상표를 출원(아시아경제, '22.7.20.)
- E씨는 '17.3월부터 '빅베이비'라는 브랜드로 물통을 판매하면서 상표등록을 준비하던 중, 실제 제품 출시도 하지 않은 F씨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E씨의 사업개시일보다 늦게 상표 출원·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바, F씨의 경우와 같은 악의적 상표 선점을 막아 주시기 바람(국민신문고, '17.5월)

-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상표등록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알려줄 수 있는 팝업창 등 **알람(ALARM)기능 부재**

※ **신용카드 가맹 및 결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청자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신청서 뒷면에 '**유의사항**'으로 안내

□ 개선방안

○ 사업개시 단계에서 '상표등록' 안내절차 마련

※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안내)

- ⇒ ①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에서 팝업으로 안내**(링크 제공)
②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상표등록 안내문 제공**

※ 특허청 : 안내컨텐츠 제작 및 국세청 협조 요청, 국세청 : 안내 협조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세청, 특허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사전승인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택스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화면에서 바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을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또는 위택스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	행안부 (’23.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택스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시 민원창구 납부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이택스 운영 매뉴얼 등에 반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3. 6월)
② 사업개시 단계에서 ‘상표등록’ 안내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상표등록’에 관한 안내(정보) 제공 ⇒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에서 팝업으로 안내(링크 제공),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상표등록 안내문 제공 ※ 특허청 : 안내컨텐츠 제작 및 국세청 협조 요청, 국세청 : 안내 협조	국세청 특허청 (’23. 6월)

정본입니다.

2022. 12. 20.

국 민 권 의 위



A C R C